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333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20년 2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22일

2. 제안이유

- 가.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사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예술적 소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풍부하게 갖춘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이며
- 다. 기존의 저소득층 음악영재의 사업의 만족도, 진학률 등 교육의 성과가 좋고, 동북권에 있는 기존 교육기관 이외의 신규 음악 영재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권역별 균형 도모 및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사업명 :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 사업내용 :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및 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2년) 예정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총 50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위탁

나. 주요 위탁 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2년) 예정
- 위탁업무
 - 교육カリ큘럼 기획 및 강사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평가
- 소요예산 : 200백만원('20년도 예산)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2020년 서울시 예술영재 교육 추진계획(문화예술과-18561.'19.12.19.)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내 음악교육과 미술교육을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¹⁾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1항²⁾에 따라 서울거주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현재 까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는 100명을 대상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 연주회 개최 등의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2017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72회 임시회)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계약을 한 상황임.

- 동 사업은 서울의 음악관련 자원을 토대로 음악으로 행복한 문화 시민도시를 앞당기고, 음악 장르 지원 및 인프라구축 등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매력적인 음악도시를 구현하자는 ‘글로벌 음악도시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 기본계획(문화정책과-14996, 2019.10.)'에서 2023년까지 음악영재 교육 대상을 100명에서 200명까지 확대하는 목표와,

상임위의 교육대상확대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지역적 편차 해소를 위해 현 수탁기관이 소재한 동북권 이외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임.

- 다만, 음악영재 교육의 특성상 1:1 레슨 및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어 현재 100명을 교육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추가 인원 50명을 수용할 경우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현재 수탁기관인 건국대학교가 동북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음악영재 교육기관을 동북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신규 위탁(2021년 12월까지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2(교육기간 : 6 ~ 12월)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초3~고1 학생 총 50명(음악)
- 추진방법 : 음악영재 기관 추가 신규위탁 추진(동북권 이외 소재한 기관 선정 예정)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2년)

사업내용

- 음악, 국악, 미술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전문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소요예산 : 200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0 저소득층 예술영재 추진계획 수립 '19. 12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20. 1~2월 - 조건부(기준 음악영재 교육 사업과 차별화 등) 적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조치결과 회신 '20. 2월
○ 신규 위탁 시의회 동의 '20. 2월
○ 신규 위탁 공모 및 적격자 심의 '20. 4월
○ 비용심사·협약체결 '20. 5~6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 6~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0. 12월

-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 실시된 이래 현재 (2019년)까지 총 1,108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중 9.5%인 총 105명이 예술고 및 대학교를 진학하는 성과를 보였음.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수 탁 기 관	교育인원	선 발		비 고 학교 진학
			3 년 재 계 약	3 년 계 약	
2008년	건 국 대 학 교 산 학 협 力 단	60명	공 모	10명	
2009년		75명	재 계 약	3명	
2010년		74명		13명	
2011년		99명	3 년 재 계 약	7명	
2012년		100명		13명	
2013년		100명	재 위 탁(공 모)	8명	
2014년		100명	재 위 탁(공 모)	10명	
2015년		100명	재 계 약	8명	
2016년		100명	재 위 탁(공 모)	6명	
2017년		100명	재 위 탁(공 모)	7명	
2018년		100명		13명	
2019년		100명	3 년 계 약	7명	
총 계		총 1,108명			총 105명

- 한편, 최근 3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의 중도포기 인원 및 사유를 살펴본 바, 2017년에는 중도포기자가 없었으나, 2018년 9명, 2019년 2명으로 3년간 총 11명의 중도포기자가 있었고, 포기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3건, 거리상의 어려움 2건,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부족 2건 등이었음.

<최근 3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중도포기자 및 사유 현황>

연 번	해당 연도	사유
1	2018년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
2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
3		차이코프스키음악원으로 진학
4		거리상의 어려움으로 중도포기
5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부족(토요수업 불참)
6		개인사유로 중도포기
7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
8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
9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부족(토요수업 불참)
10	2019년	이혼 가정으로 면접교섭권과 관련 토요수업 불참
11		타 지역으로 이사함

- 또한 최근 3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민원을 살펴본 바, 2017년 2018년에는 민원이 없었고, 2019년에는 거리상의 문제, 강사 변경 요청,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요청 등 총 3건이 있었음.

<최근 3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민원발생 현황>

연번	민원내용	영재원 답변
1	1) 거리상의 이유로 등하원의 어려움을 제기 2) 위와 관련 강사의 개인스튜디오에서 수업받기를 희망 3) 본인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지에 관해 서울시 민원을 넣겠다고 함.	교육원이 아닌 외부장소에서의 레슨은 관리의 어려움 등 음악영재 교육원 방침과 맞지 않아서 불가하다고 설명
2	강사 변경을 요청	회의 후 강사 변경 진행
3	다양한 창의성프로그램 중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 요청	학생의 성격 및 요청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진행

*2017.2018년 미발생

- 2019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중 95.6%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음악적 성취감과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성취감과 만족도	빈도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74	80.4%
그렇다	14	15.2%
보통	4	4.3%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92	100.0%

응답자 중 89.0%의 학생들이 전국음악영재교육원의 교육에 재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

재 참가의사	빈도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74	80.4%
그렇다	8	8.6%
보통	7	7.6%
그렇지 않다	3	3.2%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92	100.0%

- 제272회 임시회 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 지원 사업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비해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이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권역별 음악영재들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동북권이 44.1%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동남권(23.5%), 서남권(17.0%), 서북권(10.2%) 순으로 서울시는 권역별 분포현황을 참고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임.

<'08년 ~ '19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권역별 분포 현황>

구 분	권 역 별 합 계	비 고
총 계	1,109 (100%)	
도심권(3)	58 (5.2%)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8)	489 (44.1%)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랑구
동남권(4)	261 (23.5%)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서북권(3)	113 (10.2%)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7)	188 (17.0%)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음악영재 관련 국내 학위논문 연구동향에서 나타난 한국과 외국의 음악영재 교육 프로그램 비교연구(박다솜, 2018. 2. 상명대학교)”에 따르면 한국과 외국의 음악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의 설립 목적을 비교한 결과,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공통점이 있으나 영국과 러시아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 양성”을 위한 목적이 있고, 미국은 “음악연주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목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한국과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외국은 음악영재를 예술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음악적 표현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반면,

한국은 음악영재를 실기 위주에만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분명 실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음악영재 교육 발전을 위해 외국의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의 시스템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박수민, 2016. 5.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고 수준 높은 안목과 전문성의 가진 교사로부터의 가르침, 심미적 학습 경험 제공, 자아실현의 촉매역할, 동기부여와 연주 능력 향상, 음악성 개발 등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악기마련 곤란으로 기회의 제약, 부모의 경제적 지원 능력 한계, 가족의 비협조로 인한 혼란 등이 있으며,

그 중 “저소득층”을 범주로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득에 작은 변화로 인해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자격의 경계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또한 市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정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공백이 재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이라는 대상을 명시하는 사업명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명 중 “저소득층”을 대신할 다른 용어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층을 위한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만족도조사(김효영, 2011. 12. 이화여자대학교)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총 6개, 민간기업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원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한 데 대부분 학생 본인이 원해서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확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발전 방향과 전략 및 구체적인 개선사항들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본 동의안은 기존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2022년 12월)과 시의회 동의 대상연도가 다르므로 대상을 달리하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통합하여 위탁동의안을 상정할 필요성이 있음.